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12278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12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하여
가. 피고와 C[포천시 D] 사이에 2024. 1. 1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,나. 피고는 C에게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
원 포천등기소 2024. 6. 20. 접수 제270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-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김진영

별지

1)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한 표시를 누락하였으나, 청구원인의 기재로 보아 피고의 지분에한하여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택한다.